

구인신청서(상용직용)

구인인증번호(접수번호)	접수담당자 작성란	접수일	년	월	일	(처리기간 1 일)
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	---	---	---	------------

□ 다음 사항을 읽고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1. 구인신청서는 **모집 직종별로 각각 작성**해야 하며, 신청인이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인신청의 유효기간(15일 ~ 2개월의 범위에서 선택 가능)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해 다시 구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2. **채용이 완료되거나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** 구인신청한 기관에 연락하거나 워크넷(http://www.work.go.kr)을 통해 **채용 마감** 또는 **신청 내용 변경**을 요청해야 합니다.
3. **파견근로**의 경우 사업내용란에 “**근로자 파견업체**”임을 표시하고, 아래의 **첨부서류**를 제출해야 합니다.
 - ①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
 - ② 파견근무지, 파견 예정업무,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
4.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「**직업안정법**」 제47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□ 구인신청인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적합한 구직자의 알선을 위해 **다른 기관(시스템)에 신청인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**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√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[]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[] 여성새로일하기센터 []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[] 그 밖에 워크넷을 이용하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[] 동의하지 않음

2. 신청인의 구인정보를 **워크넷을 통해 공개**하는 것에 대하여 **동의**하십니까?
 [] 동의 [] 동의하지 않음 (비공개 사유: _____)

3.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**전자정부법**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'**사업자등록증명**'을 확인하는 것에 **동의**하십니까?
 [] 동의 [] 동의하지 않음 (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)

「**직업안정법 시행령**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합니다.

사업체명	대표자 또는 신청인	년	월	일
직업안정기관의 장	귀하	(서명 또는 인)		

